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7호, 2026. 10. 22.,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2.] [해양수산부령 제833호, 2026. 10.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물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 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는 방법, 사이버물 내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7호

○ 해양수산부령 제8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라 한다)에게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물(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물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제4조의3(중전의 제4조의2)제1항 전단 중 "영 제5조의2"를 "영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의2제4항"을 "영 제5조의3제5항"으로, "연장"을 "연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2017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2027년 1월 1일

별표 3 제2호가목2) 중 "표시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2) 중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를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국·○○국·○○국), 외국산(○○국·○○국·○○국 등), 외국산"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마) 중 "표시"를 "표시할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 ☐ 납부기한 연기 ☐ 분할 납부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과징금 부과내용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신청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 납부기한 연기 ☐ 분할 납부 ☐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관세청장

귀하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관세청, 시 · 도, 시 · 군 · 구